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준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36

발의연월일: 2024. 7. 11.

발 의 자:이준석·조인철·김기현

신장식 · 천하람 · 이주영

우재준 • 김 현 • 모경종

김상훈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하면서, 사용자의 재고용 허가를 받은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2년 미만의 범위 에서 1회만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국내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외국인력 수요가 다양해짐에 따라 이미 유입된 숙련된 외국인근로자의 활용도를 높이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고용노동부도 2023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에서, 산업·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위해 체류기간 등의 우대를 통해 외국인력 숙련체계를 구축해야 할것을 제안함.

이에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하면서 향후 1년 이상 효력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노동부장관 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3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 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신설).

법률 제 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 차례만 2년 미만의 범위에서" 를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 2년 미만
 - 가.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 인근로자로서 제18조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 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 한 근로자
 - 나. 제12조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로서 제18조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근로자
-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근로자: 3년 미만
 - 가.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하면서 연장받는 취업활동 기간이 시작되는 날부터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사용 자와 체결하고 있을 것

나. 업무 숙련도의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한국어능력 및 사회통합 수준을 검증하기 위한 사회적응 프로그램 등 고용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을 것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취업활동 기간 제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18조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자로서 이 법 시행 후 제18조의2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근로자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18조의2(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제18조의2(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외국인근로자는 제18조에도 불 구하고 한 차례만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 장받을 수 있다.

- 1.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용허가 를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로서 제18조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 3년이 만 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 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 용 허가를 요청한 근로자
- 2. 제12조제3항에 따른 특례고 용가능확인을 받은 사용자에 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로서 제18조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 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 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근로자

관한 특례) ① -----

-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 2년 미만
- 가.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용 허가를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로서 제18조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 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 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 가를 요청한 근로자
- 나. 제12조제3항에 따른 특례 고용가능확인을 받은 사용 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 자로서 제18조에 따른 취 업활동 기간 3년이 만료되 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

<u>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u> <u>고용 허가를 요청한 근로</u> <u>자</u>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근로자: 3년 미만 가.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하면서 연장받는 취업활동 기간이 시작되는 날부터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사용자와체결하고 있을 것

나. 업무 숙련도의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한 국어능력 및 사회통합 수 준을 검증하기 위한 사회 적응 프로그램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 정을 이수하였을 것

② · ③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